

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(제5조제4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(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로 한다.

나.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,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
2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2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3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4호	지정취소	